

2024년도 제1회 담양군의회 일반임기제(속기) 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24년도 제1회 담양군의회 일반임기제(속기) 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4년 2월 19일

담양군의회인사위원회 위원장



1. 임용 예정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근무부서	임용분야	임용등급	인원	근무기간	담당업무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	속기 분야	지방속기9급 (일반임기제)	1명	채용일로 부터 2년	· 회의록 작성 및 발간 · 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관리 · 본회의 및 위원회 진행 보조 · 기타 의회운영 사무보조 등

※ 근무기간은 업무능력 및 성과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제2항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3. 응시자격

가. 공통 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 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 18세이상

○ 성별 및 주소지 : 제한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자

○ 국 적 : 대한민국(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제외)

나. 직무분야 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아래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

임용분야	자 격 요 건
속기분야	· 1년이상 임용예정 관련분야(속기)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지방속기9급 (일반임기제)	※ 필수자격 - 한글속기 3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만 인정)

※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회, 지방의회, 공공기관* 등에서의 속기분야 실무경력

* 공공기관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기관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심사방법 : 제출서류를 통해 자격요건 서면 심사
- 합격자 결정 :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모두 합격 처리
 - ※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 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 재공고
 - 상기 사유로 재공고 시, 당초 지원자는 기 제출서류로 대신함.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심사대상 : 1차시험 합격자
- 심사방법 : 개별 면접,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평가
- 심사항목 : 5개 항목으로 평정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성실성,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다. 합격자 결정 및 발표

- 합격자 결정 : 2차시험에서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선발
 - ※ 동점자 발생시 관련분야 경력기간, 연장자 순으로 결정
 - ※ 임용후보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차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임용시험결과(점수 및 순위)는 비공개
- 합격자 발표 : 담양군의회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5.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임용시험 공고	2024. 2. 19.(월) ~ 2. 28.(수)	
원서교부·접수	2024. 2. 26.(월) ~ 2. 28.(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2024. 3. 6.(수) 전후	담양군의회 홈페이지 공고 (합격자 개별 통보)
면접시험	2024. 3. 11.(월) 전후	
최종합격자 발표	2024. 3. 13.(수) 전후	담양군의회 홈페이지 공고 (합격자 개별 통보)
임 용	2024. 3. 15.(금) 이내	

※ 업무추진상 필요시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6. 보수수준

○ 근 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연봉 및 연봉한계액) 및
2024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 ~ 18:00), 주40시간 근무

○ 수 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신규 임용자는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당해 등급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
하여 책정할 수 있음.

(단위 :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비 고
9급(상당)	51,290천원	30,774천원	

※ 고용노동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 희망시 가입
가능(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이내)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담양군의회 홈페이지(<http://dycouncil.go.kr>)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 서식(응시원서, 이력서 등)을 다운로드받아 사용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4. 2. 26.(월) ~ 2. 28.(수) / 3일간
 - 접 수 처 :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의정팀 ☎ 061-380-3512)
 - 접수방법 : 방문 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빠른등기) 접수
 - 방문 접수 : 평일 근무시간 09:00~18:00(12:00~13:00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
 - 등기우편 접수 : 접수 마감일 우편 소인분까지만 인정
-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등기우편 접수 시 유의사항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우편소인에 한해 유효합니다.
- 우편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한 응시자는 접수 마감일(18:00까지)내에 인사담당자(061-380-3512)에게 우편발송 사실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합니다.
- 우편봉투에는 ‘일반임기제(속기) 임용 응시원서 재중’ 문구를 표기하기 바랍니다.
-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 상당)를 구입하여 동봉하되, 응시원서에 부착 금지
- 응시표는 접수 마감 후 e-mail을 통해 송부하므로 응시원서에 e-mail 주소 정확히 기재
- 서류 미비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공고내용을 빠짐없이 체크하여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미비 서류에 대한 보완은 접수마감일 18:00까지입니다. 접수 마감일 이후 우편 도착 서류에 대해서는 보완이 불가합니다.
- 접수처 주소 : 우)57339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정팀(인사담당자)

8.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별지 1호서식)

- 응시수수료 : 5,000원(수입증지)
 - * 응시수수료는 담양군청 민원과에 납부 후 응시원서에 인증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 등기우편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우체국 통상환증서’로 대체
 - * 정부 수입인지 및 타 시도 수입증지 등은 불가

② 이력서 1부(별지 2호서식)

-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서류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③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내외) 1부(별지 3호서식)

④ 직무수행 계획서(A4용지 5매 내외) 1부(별지 4호서식)

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사본 또는 원본 1부(사본 제출시 원본 지참)

⑥ 주민등록 초본 1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표시)

⑦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 5호서식)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6호서식)

⑨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1부(별지 7호서식)

⑩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또는 원본 1부(사본 제출시 원본 지참)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해 인정
(증빙자료 미제출시 불인정)
-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의 날인과 연락처, 응시자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근무기간, 상근/비상근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서류여야 함
 -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해야 함.(미제출시 불인정)

- 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재직)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발급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

⑪ **관련분야 경력사항 증빙서류 1부(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중 1종

○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 발급) 1부**

-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www.hometax.go.kr),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 발급신청시 과세기간은 **관련분야 근무기간(연도) 전체 설정**

○ **폐업자 정보 사실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제출한 경력이 폐업회사인 경우, 국세청의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⑫ **응시관련분야(속기)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지참)**

※ ①~⑫서류를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함께 제출

9. 불합격자의 서류 반환 청구

- 청구기한 : 최종합격일로부터 1개월까지
- 청구방법 : 반환청구서(별지 8호서식) 작성 제출
[우편 또는 팩스(061-380-3590) 또는 방문 제출]
- ※ 청구기한 내 반환 미청구 시 채용서류는 파기될 수 있음.

10. 기타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확인이 불분명한 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반환해 드립니다. 단, 반환된 서류의 사본은 문서 보존기간까지 보관됩니다.
-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 접수일, 시험실시일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한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임용결격 사유,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복무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담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적용합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같은 임용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현재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전부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험계획은 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담양군의회 홈페이지 (<http://dycouncil.go.kr>) '고시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정팀 인사담당자(☎061-380-3512)

직무기술서

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속기분야	지방속기9급 (일반임기제)	1명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

주요업무	○ 담양군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등 각종 회의 회의록 작성 및 발간 ○ 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관리 ○ 기타 의회운영 사무보조 등
------	---

필요역량	○ (공통 역량) 윤리의식(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 지향마인드(공복의식, 친절) ○ (직급별 역량) 과업이해력, 치밀성, 협조성, 조직헌신 ○ (직렬별 역량) 정보관리능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력
------	--

필요지식	○ 속기 관련 각종 지식
------	---

응시 자격 요건	관련분야 : 속기
	○ 1년이상 임용예정 관련분야(속기)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필수자격 - 한글속기 3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만 인정)